

# 심사보고서

-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507호
----------	-------

2016. 12. 14.(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11월 22일
-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3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12월 05일

-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함승덕 충북도립대학총장)

가. 제안이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5년부터 장학금 예산을 대학회계로 편성·운영 중으로,
- 대학회계와 장학기금 간 중복 운영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4장 장학기금 삭제(안 제20조부터 제26조 까지)

## 3. 검토보고 요지

###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본 조례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국립대학회계법」 ” 이라 함)의 제정(2015. 3.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한 바, 별도 계정으로 운용하던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규정된, 도립대 장학기금 조성 재원은 다음 3가지 임.
  1.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내외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
- 도립대 장학기금이 고갈되어 기금 운용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기금의 주요 재원은,
  - 첫째,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지원하는 국비 교외장학금(총 장학금의 65.6%)인데 이는 제 I 유형과 제 II 유형으로 구분되며, 제 I 유형은 대상선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고, 제 II 유형은 도립대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회계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음.

- 둘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 징수액의 10%(총 장학금의 8.4%)인데, 대학회계 재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국립대학회계법」 제25조에 따라, 등록금 징수액은 기금으로의 전출이 불가능한 바, 사실상 대학회계를 통해 관리할 수밖에 없음.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 「국립대학회계법」

제25조(회계 간 전입·전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그리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 다만, 자발적 기탁의 경우로 한정해 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는 허용하고 있으며, 외부 장학기탁금은 향후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의 발전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제4조(사업)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생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개인·기관·단체·기업체의 기부금품

- 또한, 장학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기금 순수조성액은 181,811,500원으로, 이 중 157,599,957원은 이미 지출하였고, 현재 남은 24,211,543원도 올 연내 지출 예정으로, 기금의 운용 수익금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음.
- 따라서, 기금 잔액 현황 및 제도적 변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도립대 장학기금의 별도 유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 등 제도적 제한에 따라, 대학회계와 장학기금 간 중복 운영에 따른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장학기금에 관한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 개정 이후 “충북도립대학 장학 운영 규정” 등 하위 규정의 개정 추진 시, 장학금의 조성, 지급, 결산보고 등 도립대 장학금 운용에 있어 향후 장학금 운영계획<참고자료2>에 따라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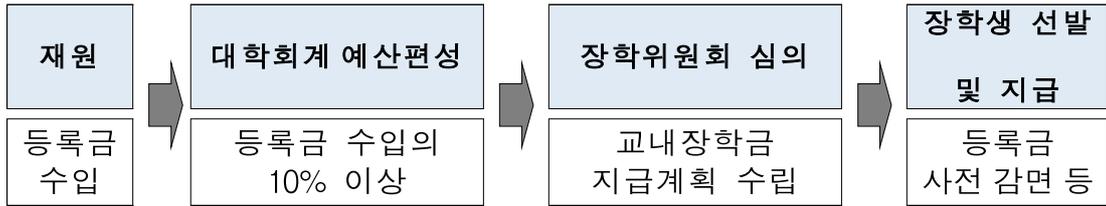
**<참고자료1> 장학기금 조성 및 잔액 현황**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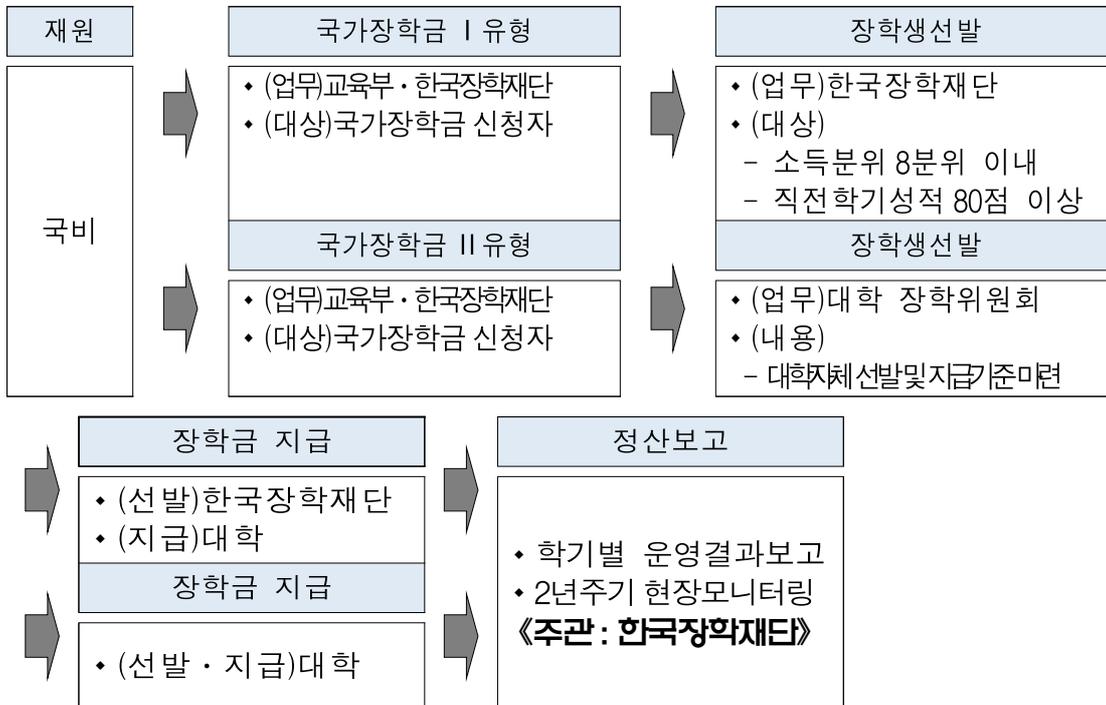
구 분	조 성 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처리계획
	2015년	2016.10월			
<b>합 계</b>	2,424,287,728	<b>1,702,503,823</b>	<b>1,508,347,823</b>	<b>194,156,000</b>	
순 수 조 성 액	339,227,760	181,811,500	157,599,957	24,211,543	소진
국가장학금1유형	899,422,011	783,458,378	783,111,461	346,917	대학회계 반납
국가장학금2유형	1,156,894,843	708,380,805	544,479,208	163,901,597	장학재단 반납
희망사다리장학금	2,956,876	4,956,886	4,956,876	10	대학회계 반납
사랑드림장학금	2,400,490	1,200,513	1,200,490	23	대학회계 반납
나눔지기장학금	23,385,748	22,695,741	16,999,831	5,695,910	소진

## <참고자료2> 향후 장학금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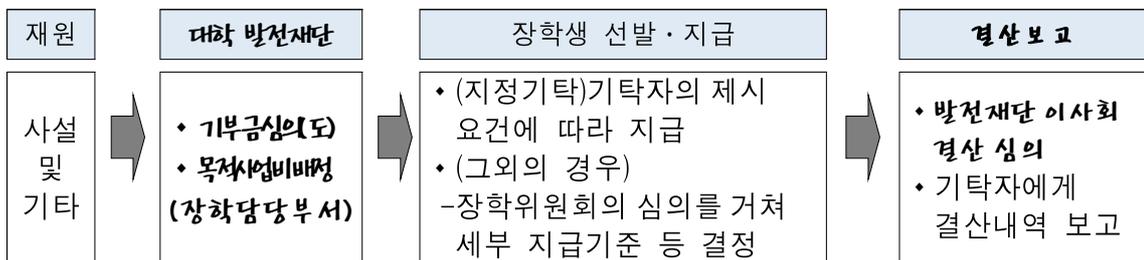
### □ 교내장학금 지급



### □ 국가장학금 지급



### □ 기타 교외장학금 지급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장학기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장 장학기금</u>	<u>&lt;삭 제&gt;</u>
<p><u>제20조(기금설치)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장학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u>&lt;삭 제&gt;</u>
<p><u>제21조(기금구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내외</u></li> <li><u>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u></li> <li><u>3.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u></li> </ol>	<u>&lt;삭 제&gt;</u>
<p><u>제22조(기금의 용도)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만 사용한다.</u></p>	<u>&lt;삭 제&gt;</u>

현행	개정안
<p><u>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대학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u></p> <p><u>② 기금관리운용을 위하여 “장학기금”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u></p> <p><u>③ 제2항의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총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학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학생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u></p> <p><u>④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u></p>	<p><u>&lt;삭 제&gt;</u></p>
<p><u>제24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범위, 대상자선정,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u></p>	<p><u>&lt;삭 제&gt;</u></p>

현행	개정안
<p><u>제25조(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lt;삭 제&gt;</u></p>
<p><u>제26조(준용규정) 장학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u></p>	<p><u>&lt;삭 제&gt;</u></p>

# 관계법령

개정조문	관계법령	주요내용
제20조 부터 제26조 까지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회계 간 전입·전출) ①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u>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u> (이하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u>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u>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